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Standards Administration

Wage and Hour Division

요약문서 #23: 공정근로기준법의 오버타임 지급 규정

이 요약문서는 공정근로기준법의 오버타임 지급 규정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특징

근로자가 오버타임을 하도록 규정하거나 허락한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그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규정

예외대상이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들은 주당 40 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에 대해 기본급의 한배 받을 지급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6 세 이상의 노동자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공정근로기준법은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또는 비번일등에 대해 오버타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정근로기준법은 근로주일 단위로 적용된다. 근로자의 근로주일은 일정하게 정해지고 되풀이되는 168시간--하루 24 시간씩 7 일간--의 기간이다. 이 주일은 달력상의 한 주일과 같을 필요는 없으며 일주일중 어떤 요일이나 어떤 시간에도 시작될 수 있다. 또 특정 그룹의 근로자나 특정 근로자들에게 다른 근로주일을 적용할 수 있다. 각 근로주일의 근로시간은 따로 따로이며 두 근로주일 이상의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나눌 수 없다. 일반적으로, 특정 주일에 일한 오버타임 임금은 일한 주일에 대한 원래 임금지급 날짜에 지급되어야 한다.

정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정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제외되는 특정 지불금액들을 제외한 모든 임금을 포함한다. 정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지불금액은 고용주를 대신해 지불한 비용, 오버타임 수당, 토.일요일, 국경일 수당이나 비정규 보너스, 특별한 날의 선물, 휴가, 국경일, 병으로 인한 결근에 대해 지급된 임금등을 포함한다.

임금은 성과급, 월급, 커미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있어 오버타임은 특정임금에 의한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시간당 임금은 (법으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근로주일당 총 임금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근로자가 한 근로주일 동안 서로 다른 시간당 임금으로 두가지 이상의 일을 했다면 시간당 임금은 두 임금의 평균이다. 즉, 모든 임금을 더해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근로자가 현금 대신에 물건이나 시설의 형태로 임금을 지불받았다면 고용주가 부담한 비용이나 물건이나 시설의 적정가격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흔한 문제점들

일정치 않은 오버타임 시간에 대한 일정 금액: 오버타임 시간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지불한 것은 그 금액이 시간당 오버타임 수당 이상이라고 해도 오버타임 수당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기본급이 시간당 \$12.00 이고 근로자가 일요일에 10 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더라도 임금 정액인 \$180 의 일부분은 일요일 초과근무 수당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같은 예로 시간당 \$13.00 씩 6 시간 근무 협정을 맺었을 경우 초과근무 시간 동안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78.00 전액이 근로자의 기본급을 결정하는데 있어 포함되어야 한다.

1주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는 경우의 임금: 1 주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고정급이라 하여 FLSA의 규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1주당 45시간 근무에 \$405의 임금으로 채용된 경우, \$405의 규정 노동 시간 임금을 45시간으로 나누면 \$9.00이란 기본급이 나온다. 따라서 근로자는 5시간의 추가근무 시간과 기본급의 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곱하여 나오는 추가의 초과근무 임금을 받게 된다($\$4.50 \times 5 = \22.50).

오버타임 규정은 삭제될 수 없다: 오버타임 규정은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합의로 인해 삭제될 수 없다. 하루 8 시간이나 주당 40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치는 합의사항도 역시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이다. 오버타임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든지 미리 허가되지 않은 오버타임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공지사항 역시 근로자가 오버타임을 했을 때 지불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 법규에 포함된 정식사항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임금 및 시간에 대한 공문서는 전화번호부에서 미연방정부란에 기재된 가까운 임금시간과에서 얻을 수 있으며 연방 노동부 무료 전화 1-866-4USWAGE 로 전화해 얻을 수 있다.

U.S. Department of Labor
Frances Perkins Building
200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210